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어렵지 않아요!



박정선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의사·직업환경의학전문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높아진 책의 효용가치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길잡이」(2009)의 수정증보판으로, 책이 발간됐던 시점은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을 때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마치 ‘작업환경측정’처럼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었다. 까닭에 책의 효용가치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가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었다. 앞으로 유예기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2024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도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역자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이 책이 소규모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 실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수정·보완을 거쳐 출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일본판 원전의 제목은 「바로 구축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며, ILO 제네바 본부 산업보건국장과 ICOH 회장을 역임한 카츠타카 고기, ILO 제네바 본부 및 태국과 인도 등지에 있는 ILO 지부에서 산업보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쓰요시 가와카미,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의과대학의 구니오 하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 온 산업의과대학의 아키요시 이토가 저자로 참여하였다. 책 제목과 저자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 책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위험성평가를 정통하게 소개할지, 그 개념을 얼마나 실용적으로 안내할지 기대를 모으게 한다.

노동자 스스로도 작업환경 점검이 가능하도록

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우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부 단계임을 그림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책의 곳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해답이 있다. 가령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제3단계 안전보건방침서 작성’을 보면 된다. 제2항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규정이고, 제3항과 제4항은 ‘제4단계 위험성 평가단위 구분과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참고하면 된다. 제5항, 제6항, 제7항은 ‘제2단계 전사적인 참여의 명확화와 근로자 의견 존중’을, 제8과 제9항은 ‘제10단계 위험도 관리조치의 상호 조정’을 찾아보면 된다. 아울러 시행령 제5조는 ‘제12단계 지속적인 개선과 종합점검’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규모가 아주 작고 내부에 산업보건 전문 인력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단계에서 이 책이 원하는 대로 ILO의 직장개선 프로젝트(Work Improvement in Small Enterprise: WISE)를 그대로 적용해 보거나 아니면 부록으로 첨부한 ‘대책제안점검표(Action Checklist)’만이라도 사용해 볼 것을 역자들은 권하고 있다. 대책제안점검표를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구로 원하는 이유는, 이 점검표는 문제를 지적하는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달리 다양한 측면에서 작업환경 표준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개선대책 목록표이기에 전문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노동자들끼리 자신들의 작업환경을 점검해 바로 개선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